과 업 지 시 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2023. 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 차

Ⅰ. 일반사항 ····· 3

1. 정의 ····· 3
2. 사업개요 ····· 3
3. 사업범위 ····· 4
4. 입찰 참가 자격 ····· 5
5. 계약조건 ····· 7
6.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 7
7. 제출서류 ····· 9

Ⅱ. 특수조건 ····· 10

1. 정의 ····· 10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 10
3. 납품 및 설치 ····· 11
4. 검사 및 검수 ····· 13
5. 교육 및 운영지원 ····· 14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14
7. 계약의 해지 ····· 15
8. 기타사항 ····· 15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 17

1. 하드웨어(H/W)-중복제거 백업장비 ····· 17
1. 하드웨어(H/W)-백업 저장장치 ····· 18
1. 하드웨어(H/W)-백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 19
1. 소프트웨어(S/W)-OS 백업 솔루션 ····· 19

Ⅳ. 보안요구사항 ····· 20

별첨 서식 등 ····· 28

Ⅰ 일 반 사 항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발주처' 라 한다)의 "노후 백업 시스템 교체" 사업에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 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나. 입찰방법 : 긴급/제한(총액)-적격심사

다. 사업예산 : 금185,350,000원(금일억팔천오백삼십오만원/부가세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년 11월 10일**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설치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버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백업 장비의 노후화와 단종으로 부품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백업장비 장애 시 데이터 백업이 불가능하며 백업 용량 부족으로 인한 백업 데이터 보유 기간이 현저히 떨어짐

3 사업범위

가. 사업범위는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특수조건” 과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에 따른다.

1) 데이터 백업 환경 구축

◯ 데이터 백업 저장장치 구매

– 중복제거백업장비 1식

◯ 테이프 백업용 LTO 장비(LTO-8) 1식

◯ 10GbE 네트워크 스위치 1식

◯ OS 백업 솔루션 11식

※ 세부내용은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참조

2) 도입장비 시스템 구성 및 테스트, 최적화 및 안정화

◯ 도입장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운영환경 설정

◯ 백업 대상, 시간, 스케줄에 대한 최적화 검증 활동 수행

3) 기존장비 재구성/재배치를 통한 백업체계 고도화

◯ 기존 백업장비를 활용하여 통합백업데이터를 2차 백업 연계 구성

4) 공급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교육, 기술 지원 및 이전

◯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관리, 교육, 기술 지원(필요시)

나. 기대효과

◯ 신속한 백업 및 복구체계 구현으로 신뢰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제고

– 중요자료에 대한 유·손실 최소화 기반 확보로 신뢰성 향상

– 시스템의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DATA 복구체계 가동을 통해 업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함으로 업무 서비스 품질 고도화

다. 납품 시 유의사항

1) 과업기간 이내에 물품의 납품, 설치 및 구성을 완료 하여야 하며 100%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

2) 도입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3) 과업수행 이전에 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구성, 재설치 등에 따른 제반 기술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차.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카. **원활한 백업 제안 제품 기술지원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가상화 공식 파트너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백업 대상의 전문 지원 필요)

타.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워크아웃(워크아웃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중인 사업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파.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업체

5 계약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제반 H/W, S/W의 납품·설치)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시스템 및 부대 장비는 세부 규격서에 따른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한 시스템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에게 납품·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규격서에 맞는 물품으로 재 납품 및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처의 설치현장을 실사하고, 장비의 설치위치, 구성형태, 장비사양 등 전반적으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업무상 정보,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기술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기록 등은 발주처가 허락하지 않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의 사업담당자(또는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아래의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제출서류 제출 불가 시 계약포기로 간주해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출 시기	제출 서류
계약 체결시	– 원활한 제품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제조사의 공식 파트너 인증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원본대조필)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증권 등) –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보안서약서, 정보보안(호)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착수 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납품 및 작업 일정표, 참여인력 투입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포함) – 산출내역서(낙찰가격 기준)
검수 시 (사업완료)	– 사업완료보고서 및 완료공문 (설치내역서, 납품물품 단가명세서, 설치 사진, 유지보수체계도 포함) – 납품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서 및 라이선스 증서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보안 확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II 특 수 조 건

1 정 의

본 특수조건은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계약 이행에 필요한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검수, 교육 및 운영지원,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각종 장비 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검수 이전에 튜닝을 실시하고, 검수 이후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오픈 전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을 두어 충분한 검증 후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여야 한다.

바.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H/W와 S/W의 매뉴얼 및 작성된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검수 시 제공한다.

아. 본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업무영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자. 시스템 결함 등으로 가동 중단 횟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한 장비 일체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차.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적법한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액세스 권한 및 내/외부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라이선스를 준수해 납품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카. 발주처는 납품·설치된 제품이 규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예측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상대방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총괄하여야 하며, 통합 백업시스템 구매 설치 및 기존장비 재구성, 재배치에 필요한 설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작업을 총괄 운영하고, 기술지원 및 일정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

원하는 상위 규격의 물품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치 또는 현장 시험 시 설치장소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다.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 단종 및 1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어야 하며, 납품 내역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설치 변경 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현재 운용 중인 백업시스템 운용환경 및 구성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호환되는 물품으로 일괄 납품·설치하여 시스템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 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한다. 단, 기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세부작업 내역에 등록된 변경사항은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만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한다.

바.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유지보수업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작업시간을 편의상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백업대상 정보시스템의 개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제공된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백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한다.

자. 백업구축 내역

1)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해킹 또는 인위적인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신뢰 확보

2) 백업 장비와 S/W를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도입, 관리와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

3) 최신의 기술을 접목한 Data 중복제거장비 도입 구축으로 백업 용량의 효율적 활용과 백업시간 단축 등 백업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4) 원활한 업무운영 및 업무중단 최소화를 위한 DB 온라인 백업 구현

5) 백업환경 정비를 통한 업무자료 관리 및 복구 체계 일원화 구현

4 검사 및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 및 정상적인 I/O성능, 서비스 성능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품 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및 작업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별도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검수기간 이내에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점,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장비내역(사진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 관련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처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발주처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종이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발주처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스템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H/W 및 S/W)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의 업무 협의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각종 테스트 및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요청 시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처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을 져야하며, 동 기간 중 납품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장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다.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처에 사전 통보 후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리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납품한 제품이 동일한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소정기일 내에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설치된 제품이 규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사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처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의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를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일까지의 계약 기간 중 제작된 용역 산출물도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수칙준수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III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 하드웨어(H/W)-중복제거 백업장비

가. 통합 백업 어플라이언스(H/W, S/W)

구분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중복제거 백업장비	H/W 부분	○ 제안 용량 : 백업 가용량 48TB(최대 가용량 96TB) 이상 ○ CPU : 2.2GHz 10Core *2EA 이상 ○ 메모리 : 256GB 이상 ○ 디스크: 12TB SAS x 18ea 이상 (OS영역 RAID-1, 데이터 영역 RAID-6 구성) ○ Cache: 96GB 이상 SSD Cache 제공 ○ NIC : 10Gbe * 4Port 이상 ○ 백업 S/W License : 백업용량 48TB 이상 제공 ○ Power Supplies 이중화 제공 ○ 백업 H/W와 백업 S/W 일체형으로 동일제조사 제품 제공	1식	
	기능	○ 단일 일체형 노드로 백업 서버 및 저장 스토리지 기능 제공 ○ 소스기반 가변 블록기반 중복제거 기능을 제공할 것. ○ Windows, Linux, Unix 등 다수의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 백업관리 기능을 제공할 것 ○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별도 확장 쉘프 없이 단일 공간으로 물리적 200TB 이상 확장 지원 ○ VMware 백업 및 복구 시 CBT(Change Block Tracking) 지원 ○ 복구 없는 운영 VM 즉시 서비스 및 동시 32개 VM 부하 없는 즉시 기동 기능 지원 ○ 추가 비용 없이 DTLT, PC 백업 지원, 중복제거 백업 및 개별 사용자 한글 GUI 백업 기능 지원 ○ 빠른 가상화 즉시 서비스 및 워크로드 분산을 위한 Flash SSD 제공 ○ 추가 SW 없이 백업 완료 데이터의 손쉬운 백업 빈도, 유형검색, 날짜별, 통계 기능제공 ○ 시점별(초,분,시) 가상화 백업 복구 기능 및 장기보관, 소산을 위한 클라우드 라이선스 포함 ○ GUI에서 매일 자동으로 백업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기능 및 Checkpoint 기능제공 ○ Meta Database의 Query를 통해 원하는 백업 결과 Reporting 기능 제공 ○ 매일 자동으로 백업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기능 및 Checkpoint 기능을 제공할 것. ○ 백업 수행 시 대상 시스템의 CPU, Memory, Network에 대한 사용률 설정 기능 제공 ○ Client, DBMS, Application, 원격 복제 백업 대상 용량에 대해 무제한 License 제공 ○ 백업 시스템간의 복제 기능 지원 및 복제된 시스템에서 별도의 추가 시스템 구성없이 데이터 복구 가능할 것. ○ 백업 소프트웨어와 관계 없이 장비 내에서 Cloud 스토리지로 자동 소산되는 기능 지원 ○ 별도의 HW 추가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기반 압축, 암호화 기능 지원 ○ 단일 Web GUI를 통해 다중 시스템에 대한 통합 구성, 변경 및 관리 지원 ○ 백업받은 VM을 백업시스템에 임시 서비스 기능 제공		
	※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백업어플라이언스와 백업 네트워크 스위치는 동일사 제품일 것.** ※ 기 사용중인 백업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위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OEM 및 ODM 제품은 제외** ※ 원활한 제품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제조사의 **공식 파트너 인증 확인서 제출**			

2 하드웨어(H/W)-백업 저장장치

가. 백업 저장장치(H/W)

구분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백업 저장 장치	H/W 부분	○ LTO 8 세대 방식 ○ Interface : Native Fibre Channel (8Gbps), SAS interface (12Gbps)제공 ○ 최대 272개의 Cartridge slot 지원 가능 ○ 1개당 지원 용량 : 12TB/30TB (비압축/압축) ○ 최소 모듈 당 최대 용량 : 384TB (비압축 기준) ○ 최대 모듈 당 최대 용량 : 3.2PB (비압축 기준)	1식	
	기능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가능 ○ 동일 드라이브를 암호화 및 비암호화 모두 사용 가능할 것 ○ 이기종 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 S/W 지원 ○ 논리적 파티셔닝 기능 및 동적 드라이브 재할당 지원 가능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 관리 기능 제공 ○ Data Path failover 및 load balancing 기능 지원 가능 ○ Control path 다중화 및 failover 기능 지원 가능 ○ WORM 카트리지 지원 가능 ○ 고정된 WWN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 편의성 제공 ○ 전원 이중화를 지원할 것 ○ Rack mount kit 제공 가능 ○ 무상보증기간 1년 제공 ○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 제안 (OEM 제안 불가)		
	※ 위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3 하드웨어(H/W)-백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가. 백업용 10GbE 네트워크 스위치(H/W)

구분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백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H/W 부분	○ Chassis Slot : 1RU ○ Redundant FAN / Power Supply ○ 최대 28개의 1/10GBASE-T 지원 - 기본 28개의 1/10GBASE-T 포트 제공 - 40G x 2 or 100G x 2포트 제공 ○ Capacity : 960Gbps ○ OS10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플랫폼 지원 ○ 주요 구성요소의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VRRP와 같은 Layer 3 레벨에서의 이중화 지원 - 1 + 1 이중 AC 전력 공급 - 1 + 1 이중 FAN 지원	1식	
	기능	○ 루프 방지 기능 제공 : STP, RSTP, MSTP 및 PVST+ 호환 ○ Telnet, Syslog, Web 관리기능 등 다양한 관리 기능 제공 ○ Rack mount kit 제공 가능 ○ 무상보증기간 1년 제공		
	※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백업어플라이언스와 백업 네트워크 스위치는 동일사 제품일 것.** ※ 위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4 소프트웨어(S/W)-OS 백업 솔루션

가. OS 백업용 솔루션

구분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OS 백업 솔루션	기능	○ Windows 및 Linux OS 백업 솔루션 ○ 보유 장비의 Windows 및 Linux OS 백업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이기종 시스템 복구 가능 - 하드웨어 기종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옵션 구매 없이 시스템 복구 가능 ○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구성 정보를 포함한 전체 복구	11식	

Ⅳ 보안요구사항

1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와 하자보수
정의	사업 수행 완료 후 검수 및 검사 확인과 하자보수 조건 기술
세부내용	가. 검수 및 검사 ○ “계약이행자” 는 사업 수행 완료 후 검수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이행자” 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 는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요구사항과 다르거나 이상발견(검수 후 발생 부분),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구원” 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이행자” 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나. 하자보수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기술 지원 및 월 1회 이상 방문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이 발생 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중대한 결함 또는 30일내 **3회 이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동일 신품 이상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 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함

2 보안의무사항

요구사항 번호	보안-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관련 취득정보 누출방지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계약이행자”와 본 업무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 “계약이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명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시스템 구성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등) 현황 및 네트워크 설정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 사업 수행 시 알게 된 개인정보 일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등 국가보안 기본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계약이행자” 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원격관리 및 작업 금지. 단,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시행 ○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 매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함 ○ 서버작업 시 기관에서 지정한 장비(IP) 외에 접속 불가 ○ 내부망에 접속 금지,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반납 완료, 기관과 관련된 정보 삭제 완료, 목적 외 미사용의 내용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첨부 1]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이행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첨부 2]’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계약이행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련 문구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행사 대표는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또한,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연구원에 대표자 명의 “자료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시 알게 된 개인정보 일체

12.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고발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자”와 사업 참여인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연구원은 손해 발생 시 “계약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함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결정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보보안(호)서약서

정보보안(호)서약서

성　　명:

소　　속:

생 년 월 일:

상기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 수행을 하고자 출입함에 있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의 접근시도, 또는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보사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업무 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정보소유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금지된 타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할 경우 업무 종료와 동시에 전부 반환토록 한다.
8. 본인의 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반입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사업 종료 후 반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각종 결과물들의 삭제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9. 기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 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위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6개월~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 시 행하여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료 등의 파기에 관한 확약서

자료 등의 파기에 관한 확약서(사업완료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 수행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1~4)에 대하여 완료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산(정보 포함)들에 대하여 업무 종료와 동시에 전부 반환
2. 사업 진행 시 습득한 기관 관련 정보의 완전삭제
3. 사업 완료에 따른 각종 산출물(산출물 리스트 포함) 제출
4. 사업 진행 시 사용한 반입 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들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반출 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각종 결과물들의 완전삭제 및 **장비 목록별 삭제 확인서 작성 제출**
5. 정보자료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보관 금지
6. 업무상 취득한 보사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에 대하여 업무 완료 후에도 보사연 및 정보소유자의 승인 없이 누설 금지
7. 기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

또한, 본인은 위의 5~7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업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__)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3. .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 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층	주 소 :
기관(회사)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